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F~~ 일

여 수 시 장

2023/07/01



여수시 조례 제1904호

붙임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여수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4조 앞에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④시장은 학교, 시민,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에너지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설치)”를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활성화 관련 민·관협력 사항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에너지업무 담당과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 나.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3.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분기별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수시”를 “수시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자문, 연구 ·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앞에 “제4장 에너지절약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0부제”를 “부제”로, “주차시”를 “주차 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업무용 관용차량은 경차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우선 구입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

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표창 등)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칙</u>	<u><삭 제></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 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여수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 원칙)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p>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 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소수력·조력·해양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

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소(PFCs), 육불화황(SF6)를
말한다.

6.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
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
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
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
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
술적 체계를 말한다.

8.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
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
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
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
하기로 정부 또는 시와 약속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시는 에너지
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삭 제>

제4조(시장의 책무) ①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

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④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⑤시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시민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

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

④시장은 학교, 시민,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삭 제>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

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
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
을 저소비·고효율형 에
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
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
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시
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
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
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
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

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
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
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 시민단체, 학
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
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
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 협력해야 -----.

②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
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
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
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

력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제7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고 시민과 사업자 공공 기관 등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 협력해야
-----.

<삭 제>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활성화 관련 민·관협력 사항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 절약 교육, 설명회, 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에너지업무 담당과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3.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신 설>

<신 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 공무원, 시 의회 의원,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며,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 1회 이상으로 -----
----- 수시로 -----.

③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자문, 연구·용
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
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생략)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해촉)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 그 밖의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에너지절약 및 지원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 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시(증 · 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

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 · 설치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삭 제>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

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 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 · 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

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를 교체 · 설치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

사항을 권장한다.

1. · 2. (생략)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우선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참여 계도 및 경차 주차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난방온도 18~20°C, 냉방온도 26~28°C)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타 조례의 제·개정시에는 에너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업무용 관용차량은 경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우선 구입

4. ----- 부제
----- 주차
----- 시 -----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삭 제>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시에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삭 제>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 감독해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

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3,000제곱미터이상 다음 각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5퍼센트이상을 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탁, 판매, 운동시설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 시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에너지단체 또

중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삭 제>

제18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에너지단체 또는 연구

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 운영 또는 조사 ·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 기술 ·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 시민단체 · 기업 ·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 메달 ·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기관이 실시하는 시설의 설치 · 운영 또는 조사 ·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 기술 ·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등)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 · 시민단체 · 기업 ·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